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1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고동진・박충권・백종헌

김대식 · 안상훈 · 권영세

서일준 · 김위상 · 김태호

김성원 · 정희용 · 박수민

조지연 · 서명옥 · 서범수

조배숙 • 박성훈 • 임이자

강대식 · 엄태영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 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

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취업"을 "취업·의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	1
교육ㆍ <u>취업</u> 등의 지원	<u>취업·의료</u>
1의2. ~ 5. (생 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